#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외교통일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년 10월 14일, 김영배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10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25년 11월 14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년 1월 26일)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1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2026년 1월 28일)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영배 의원)

현행법에서 통일교육은 통일 이룩에 필요한 가치관·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직원은 통일교육 의무이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통일교육 정의에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달리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통일교육에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헌법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초·중등 교사 및 시·도 교육청의 공무원의 경우 학교 통일교육의 주축으로서 올바른 통일관 정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중등학교의 경우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도 교육청의 경우 그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초·중등학교의 장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화적 통일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는 한편, 학교 내 통일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7제1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사우)

### 가. 통일 지향점 구체화(안 제2조제1호)

개정안은 통일교육의 정의 중 '통일'을 '평화적 통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br>2.·3. (생 략) | 제2조(정의) ----------.<br>1.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br>2.·3. (현행과 같음) |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이 헌법의 지향이념임을 밝히고 있음.

현행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제1항은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제4조에서 명시한 헌법의 지향이념을 확인하고 있음.

개정안은 '통일교육'의 정의 규정에도 통일이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통일교육이 헌법의 지향이념을 반영하여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통일부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나.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에 각급 학교의 장 추가(안 제6조의7 제1항)

개정안은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추가함.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 등-------.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통일교육은 현행법 제6조의7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1]하여 그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통일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2024년도 교육대상자는 약 118.5만명으로 중앙행정기관 34.9만명, 지방자치단체 37.5만명, 교육청 7.4만명, 공공기관 38.6만명임. 이 중 중앙행정기관은 32.7만명, 지방자치단체는 30.9만명, 교육청은 7.2만명, 공공기관은 36.9만명 등 전체의 91.0%인 약 107.8만명이 2024년도에 통일교육을 이수하였음.

< 2024년도 공공부문 통일교육 참여 현황 >

(단위: 명, %)

| 구 분 | 전체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공공기관 |
|---|---|---|---|---|---|
| 전체 대상자 | **1,185,797** | 349,618 | 375,251 | 74,678 | 386,250 |
| 참여자 | **1,078,847** | 327,182 | 309,757 | 72,489 | 369,419 |
| 참여율 | **91.0%** | **93.6%** | **82.5%** | **97.1%** | **95.6%** |

출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1) 통일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교육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시·도교육청을 공공부문 통일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왔다고 설명함.

| 「지방자치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
|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br><br>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소속 직원[2]은 통일교육 실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이들에 대한 통일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에 시·도교육청의 장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그 소속 공무원 등이 통일교육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을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지도하는 약 36.2만명[3]의 교원 등도 통일교육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학교부문의 통일교육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다만, 학교 교원의 경우 부가적 행정업무 수행, 법정 의무교육 이수[4]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5]에서 추가적인 통일교육 의무화가 교원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6]

---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는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제1항제1호)하고 있고,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규정(제2항)하면서 교원과 직원을 교직원이라고 통칭(제4항)

> **「초·중등교육법」**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고 있어 교원과 직원을 별도의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3) 출처: 통일부(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2024.12.31 기준)

4) 교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 현황(총 16개 교육)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을 심사한 후에 여러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7]한 바 있으나,

| 내 용 | 연간 시수 | 법률 근거(약칭) | 소관부처 |
|---|---|---|---|
| 4대폭력 예방교육 | 교육별 연 1회<br>1시간 이상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br>성폭력방지법 제5조<br>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br>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 | 여성가족부 |
| 다문화 이해 교육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 여성가족부 |
|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 교육 | 연 1회 이상 | 청탁금지법 제19조 | 국민권익위원회 |
| 부패방지 교육 | 연 1회 이상 | 부패방지법 제81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연 1회 이상 | 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 국민권익위원회 |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연 1회 이상 |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 국민권익위원회 |
| 장애인식 개선 교육 | 연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보건복지부 |
|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 연 1시간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보건복지부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 보건복지부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시간 이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보건복지부 |
| 학교폭력 예방 교육 | 학기별 1회 이상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 교육부 |
| 안전교육 | 3년마다 15시간 이상 | 학교안전법 제8조 | 교육부 |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3시간 이상(실습 2시간)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교육부 |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연 1회 이상 | 교원지위법 제24조 | 교육부 |
| 인성교육 | 연 1시간 이상 |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 교육부 |
|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 | 연 1회 이상 | 정보공개법 제6조제5항 | 행정안전부 |

출처: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 2025.9.3.(https://neti.go.kr/hp/hm/htmlConvert.do?menuId=1000005733)

5) 에듀모닝, 「[교육 동향] "교사의 시간은 누가 지켜주나" 업무 과중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사람들」, 2025. 4. 22.(https://edumorning.com/articles/409)

6) 제21대 국회에서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 각급 학교를 추가하려는 전재수의원안(의안번호 제2104077호)에 대하여 교원노조단체 중 4개 단체(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 학교네트워크)는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개 단체(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

< 6개 교원노조단체 설립연도 및 회원수(조합원수) >

| 단체명 | 좋은교사운동 | 실천교육교사모임 | 교사노동조합연맹 |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 한국교직원단체 총연합회 |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
|---|---|---|---|---|---|---|
| 설립 연도 | 1998년<br>(2000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 | 2015년 10월 31일 | 2017년 12월 20일 | 2011년 9월 | 1947년 11월 23일<br>조선교육연합회로 시작<br>(1989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 | 1999년 7월<br>(1989.5월 결성) |
| 회원수 (조합원수) | 4,000여명 | 2,000여명 | 8,500여명<br>(2020.1월 기준) | 1,600여명 | 161,357명<br>(2018.8월 기준) | 50,321명<br>(2018.9월 기준) |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 김명식주무관 제출(2020.11.23.)

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안연월일, 2023.11.23.)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br>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br>① ----------지방자치단체(시·도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단계에서 해당 법안에 포함된 다른 조문의 내용(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근거 마련)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아니함[8]에 따라 동 대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음.

개정안에 대해 통일부는 교사와 시·도 교육청 직원을 통일교육 의무 이수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핵심 전달자인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이미 여러 법정 의무교육의 시행 책임을 지고 있어, 추가적인 의무 부여 시 행정 부담 가중 및 형식화 우려가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통일교육 행정체계 내에서 이미 운영 주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명시할 경우 중복 규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 | |
|---|---|
|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

8)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제411회 5차, 2024.1.8.)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김건)

김영배의원, 김기현의원, 홍기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